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과 유형 및 온라인 그루밍의 개념과 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

Q1

가해자가 피해자를 실제로 만나지 않아도 디지털 성폭력이 될 수 있을까요?

A1 ○

설명 :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공간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현실이 아닌 가상공간에서만 피해자와 접촉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면 디지털 성폭력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2

인터넷 검색을 하다, 내 나이 또래의 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영상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잘하면 광고를 해서 돈을 벌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직접 유포하는 것은 아니고 영상에 대한 소개, 광고 글만 쓰는 건 괜찮을까요?

A2 ✕

설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3항은 영리 목적으로 혹은 영리 목적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소개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유포를 조장하는 행위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Q3

아는 사람이 SNS에서 인기가 많은 사진이라며 사진을 하나 보내주었습니다. 사진에는 성인인지, 아동·청소년인지 모르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내준 사람의 말에 따르면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유출된 사진이라고 합니다. 사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가 디지털 성폭력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진을 저장하거나, 보는 행위까지 디지털 성폭력일까요?

A3 ○

설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 사진과 동의 없이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된 영상, 사진(복제물을 포함합니다)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